

2018년 6월 8일 개정

###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학회라고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for Lactic Acid Bacteria and Probiotics, 약칭은 KSLABP로 한다.

###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2조(목적) 본회는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관련 연구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연구회 및 총회의 개최
- (2)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및 응용연구분야와 관련된 기사총설, 연구논문 등을 수록한 학술지의 발행
- (3) 해외관련연구자와의 정보교환 및 교류
- (4)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 3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1) 정회원 : 학회 사업 목적에 관심을 갖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학생회원 : 전문대,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하는 학생으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입회한 개인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 : 본회의 사업을 협조하기 위하여 입회한 법인 또는 단체로, 단체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
- (4) 종신회원 : 정회원 중 이사회 동의를 받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각 사업의 참가 및 본회의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입회) 본회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입회 신청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입회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의 연회비는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회원은 회원의 주소, 성명, 소속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회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회원은 이하의 이유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를 탈퇴한다.

- (1) 소정의 탈퇴원을 학회에 제출 한 경우
- (2) 학생회원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정회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격 변경원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본회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훼손 한 행위가 명백하여 총회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

## 제 4장 총 회

### 제10조(총회)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 (3) 총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한다.
- (4)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의 당해년도 대회 개최시에 실시한다.
- (5) 임시총회는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11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의 소집을 위하여 개최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의 의결방법)

- (1) 회의는 총회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법인화 전까지는 총회원수의 출석 정족수는 유보한다.
- (2)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을 통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수의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결정한다. 단, 가부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본 회칙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통과하여야 한다.

- (1) 회칙의 변경
- (2)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결정 또는 변경
- (4) 사업보고, 수지결산,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議事)에 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한다.

## 제 5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약간명)
- (4) 감사 (2명)

(5) 명예이사 (약간명)

제16조(임원의 역할)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본회의 회무(會務)를 집행한다.
- (4) 감사(監事)는 이사회회의 회무 집행, 재산 및 회계 내용을 감사(監査) 한다.

제 17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1) 회장 및 부회장: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2) 총무이사: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간사장: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4)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5) 이사: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6) 감사: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7) 명예이사: 본회는 자문,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중에서 현직에서 은퇴한 경우 명예 이사로 추대 한다.
- (8)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자문 또는 고문의 위촉)

- (1) 본회에 자문 또는 고문을 둘 수 있다.
- (2) 자문 또는 고문은 본회 운영상의 각 문제에 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 (1) 본회의 원활한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2) 목적에 따라, 총무간사, 학술간사, 국제협력간사, 기획간사 등을 구분하여 임명 할 수 있다.

**제 6장 이 사 회**

제20조

- (1)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3) 이사회의 의장직은 회장이 수행 한다.
- (4) 이사회는 이사총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5) 이사회는 서무, 회계, 편집 등 본회 통상의 회무(會務)를 집행한다.
- (6) 감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7장 평 의 원**

제21조 본회의 규모가 적정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평의원을 둔다. 이에 관한 규정은 총회

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 8장 운 영

제22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3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1) 회장은 매 사업년도 개시 이전에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감사는 전항의 서류를 수리 할 때 각 서류를 검사한다.

제24조(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비, 광고비 및 기타수익으로 총당한다.
- (2) 회비, 종신회비, 학생회비, 단체회비, 이사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명예이사는 회비 면제 한다.
- (3)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둘 수 있다.
- (4)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매년 보고한다.

제25조(사무) 본회의 전체 사무운영은 총무간사가 회장단과 협의하여 집행하며, 모든 회무사항은 회지에서 발표한다.

제26조(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간사회의, 학술위원회 회의, 편집위원회 회의 및 포상위원회의 등이 있으며,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또는 회지에 발표한다.

제27조(포상) 포상은 필요에 따라(포상규정에 의거 심의한 학술상, 기술상 및 공로상 등)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회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회칙개정) 본회는 2004년에 제정된 회칙을 2018년 6월 8일 개정하며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회의 년회비는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단체회원 1구 500,000원 (1구 이상)으로 하며, 종신회원의 경우 종신 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4. 입회수속은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첨부하여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
5. 이사구성 및 이사회의 업무는 법인화 전까지 유보하며 필요한 사항은 간사회의에서 수행한다.
6. 포상위원회 구성 및 업무는 법인화 이전까지는 간사회의에서 수행한다.